



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
▶ Ctrl + F 버튼을 눌러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빠릅니다. 예) 피부양자, 주소, 건강보험 등

1. 달라지는 내용 관련

Q. 01 2021년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?

A.

① (소득요건) 가구원 및 소득 산정방식 변경

- ('21년)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⇒ ('22년)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기준

② (연령기준) 병역의무이행자 신청 연령 연장

- ('22년) 군 복무기간만큼(최대 24개월) 연장

2. 신청자격 관련

Q. 02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신청자격(아래 요건 모두 해당 시 신청 가능)

①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~34세 청년

ex) 7월 모집 시 : 1987. 7월생 ~ 2003. 7월생 신청 가능

② 청년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
- 상세 내용은 Q.03 참고

③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

- 단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

④ 신청일 기준 졸업(제적), 졸업예정·유예·수료자, 졸업학년 휴학생

○ 제외대상(아래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 경우)

① 대학교(원) 재학생 및 휴학생

- 단, 졸업학년 휴학생, 졸업 예정·유예·수료자(증명서 발급자),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신청 가능

② 지자체·정부 유사사업* 중복참여자**

* 정부 유사사업 : 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구직활동지원금, 취업성공패키지, 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

** 유사사업별 중복가능 여부 및 참여가능 시점

유사사업명	진로탐색지원형
국민취업지원제도	중복불가 (종료 후 6개월 경과 시)
청년구직활동지원금, 취업성공패키지	중복불가 (종료 후 6개월 경과 시)
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	중복불가 (종료 후 즉시)

③ 청년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원 이상인 자

④ 생계급여(기초생활보장제) 수급대상자

⑤ 사업자등록(고유번호증 포함)이 되어있는 자

⑥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

A.

Q. 03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- ① **표1**에서 **가구원 수**와 **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** 찾기
- ② **표2**에서 나의 **가구원 수**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찾기
- ③ **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** 모두의 건강보험료** 합계가 ②번에서 찾은 금액 이하이면 신청 가능

표1 가구원 수 및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

구분	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족	
	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가족	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
미혼	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본인 + 부모	등본에 함께 등재된 + 형제자매
기혼	본인 + 배우자 (이혼 또는 사별 시 “0명”)	등본에 함께 등재된 + 형제자매 + 자녀

A.

* ‘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’란?

- ①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(한 분만 등재되어 있다면, 한 분만 포함)
- ⇒ ② 없다면,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부모
- ⇒ ③ 등본에도 건강보험증에도 없다면,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 “0명”

표2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(기준중위소득 150%)

(단위: 원/월)

구분	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건강 보험료	직장가입자	102,842	171,393	223,722	272,614	319,763	370,489	434,898
	지역가입자	77,067	175,541	242,987	303,435	354,661	408,122	472,366
	혼합*	-	173,710	227,649	279,532	334,652	398,320	473,200

* **혼합이란?**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명 이상일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

- 예) 아버지, 어머니 모두 건강보험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, 아버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때 ⇒ ‘혼합’ 기준 적용

Q. 04 대학교(원) 수료자, 졸업유예자, 졸업예정자, 중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
A. ○ 신청 가능
※ 단, 수료증명서(졸업학점 이수자), 졸업예정증명서, 제적증명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

Q. 05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신청 가능 한가요?

A. ○ 신청 가능
※ 단, 야간대학(원) 재학생은 주간대학(원)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신청 불가

Q. 06 현재 고용보험(상용) 가입자이지만, 세전 월 근로소득이 90만원 미만입니다. 신청 가능한가요?

A. ○ 신청 가능
※ 단, 근로소득이 90만원 미만이라는 소득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함

Q. 07 청년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,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. 신청 가능한가요?

A. ○ 청년명의로 사업자등록(고유번호증 포함)이 되어 있으면 창업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

Q. 08 정부·지자체 유사사업(실업급여, 취업성공패키지 등) 참여하였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
○ 지자체·정부 유사사업* 중복참여자** 신청 불가

* 정부 유사사업 : 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구직활동지원금, 취업성공패키지, 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

** 유사사업별 중복가능 여부 및 참여가능 시점

A.

유사사업명	진로탐색지원형
국민취업지원제도	중복불가 (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)
청년구직활동지원금, 취업성공패키지	중복불가 (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)
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	중복불가 (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)

3. 수당신청 관련

Q. 09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만 가능(PC, 모바일 모두 가능)

★ 신청 방법 :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(youthdream.daegu.go.kr/support/main)

A.

⇒ 회원가입(SMS 수신동의 필수) 후 로그인 ⇒ 사업신청-청년수당사업 신청하기

⇒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

⇒ 질문에 대한 답변 체크 ⇒ 서류 제출 ⇒ 마이페이지-신청내역 조회

⇒ '①신청완료' 확인

Q. 10 사회진입활동지원금 유형이 2가지(상담연결형, 진로탐색지원형)인데 중복 신청가능한가요?

A.

○ 유형별로 생애 1회씩 참여 가능하나,

○ 동시참여 불가, 참여프로그램 수료 후 다른 유형 참여 가능

Q. 11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,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?

A.

- ① 타인(가족 등) 휴대폰 명의로 회원가입
- ② 본인 신분증 지참하고, 시청 별관(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, 111동 4층 청년정책과) 방문하여 회원정보 변경

Q. 12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.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?

A.

-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입력
-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.
※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대구지역 아닌 경우 신청 불가

Q. 13 가구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A.

★ **미혼** : 본인(1) +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(0~2)
+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

※ ‘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’란?

- ①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(한 분만 등재되어 있다면, 한 분만 포함)
- ⇒ ② 없다면,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부모
- ⇒ ③ 등본에도 건강보험증에도 없다면,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 “0명”

★ **기혼** : 본인(1) + 배우자(0~1)
+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 + 자녀
- 본인이 이혼한 경우, 배우자 “0명”

Q. 14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-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와 자녀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.

★ 미혼 : (본인+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)의 건강보험료

※ ‘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’란?

A.

- ①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(한 분만 등재되어 있다면, 한 분만 포함)
⇒ ② 없다면,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부모
⇒ ③ 등본에도 건강보험증에도 없다면,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부모 “0명”

★ 기혼 : (본인+배우자)의 건강보험료

↳ 본인이 이혼한 경우, 배우자 건강보험료 “0원”

Q. 15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?

A.

- 신청·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

★ 수정 방법 :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(youthdream.daegu.go.kr/support/main)

⇒ 마이페이지 ⇒ 신청내역 조회 ⇒ 신청 수정

4. 제출서류 관련

Q. 16 [필수서류]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아래 4가지(① ~ ④) 서류는 반드시 제출

① 본인 「주민등록등본」

② 본인 최종학력 증명서류[(a)~(d) 중 해당 서류]

(a) 「졸업증명서」 또는 「제적증명서」 :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도포기한 자

(b) 「졸업예정증명서」 또는 「수료증명서」 : 졸업예정자, 졸업학점 이수자

(c) 「휴학증명서」 : 졸업학년 휴학생(휴학증명서에 졸업학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「성적증명서」 추가 제출)

(d) 「재학증명서」 : 방통대, 사이버대 재학생만 가능

③ 본인 기준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 및 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

* 본인이 건강보험 부양자가 아닌 경우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만 제출

④ 부모 또는 배우자 기준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,

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 중 해당서류

* 단,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는 「의료급여증명서」 제출

⑤ 「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」(상용)

A.

Q. 17 [추가서류] 경우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서류도 있나요?

○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

㉠ 본인 기준 「가족관계증명서(상세)」[(a)~(c)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]

(a) 미혼인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 등본에 따로 등재되어 있으면서,
건강보험증에는 함께 등재된 경우

☞ 부모님과 등본에 같이 등재된 청년은 제출할 필요 없음.

(b) 기혼인 청년이 배우자 또는 자녀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

(c)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

㉡ 「근로계약서」 또는 「급여명세서」 등 소득증빙자료

- 고용보험 가입자 중 월 근로소득이 세전 90만원 미만인 경우

☞ 미취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.

㉢ 본인 기준 「주민등록초본」 또는 「병적증명서」

- 만 34세 초과 만 36세 이하인 청년 중 병역의무이행자로 신청연령이 연장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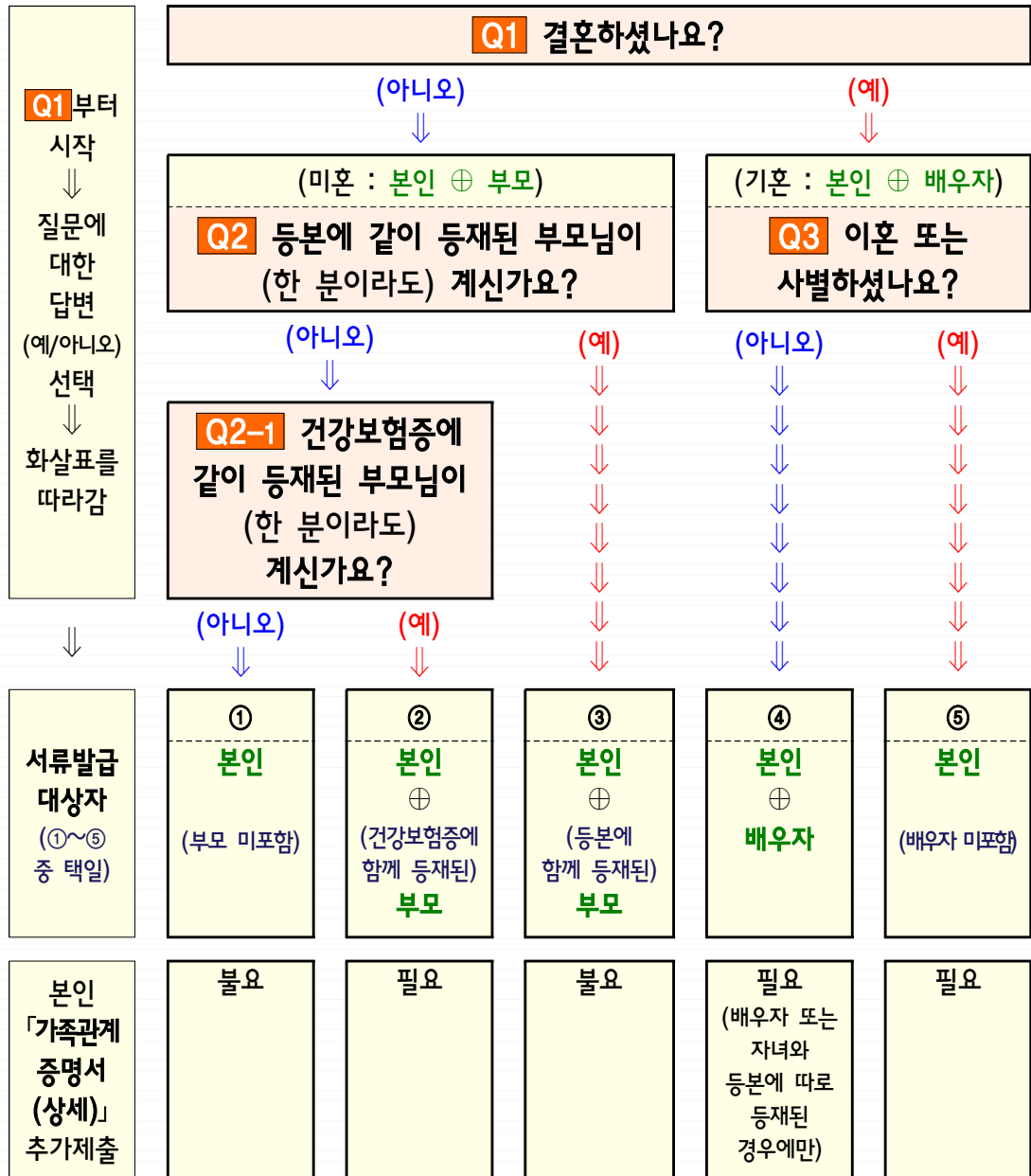
☞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청연령을 연장하기 위해 군 복무 여부 및 복무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, 만 19 ~ 34세 청년 및 미복무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.

A.

Q. 18 ③, ④ 「건강보험 서류」는 누구의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?

○ 아래 ① ~ ⑤ 중 택일

A.



Q. 19 ③, ④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 및 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 중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?

A.

구분	건강보험 부양자	건강보험 피부양자	비고
본인	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, 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	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	본인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는 반드시 제출 (부양자/피부양자 여부 불문)
부모 또는 배우자	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	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	

Q. 20 건강보험의 부양자와 피부양자 구별,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
- 부 양 자 :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
- 피부양자 :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,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되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는 자

★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로 보는 구별법

A.

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				
통보번호 : X-XXXX-XXXXXXXXXX-XX				
수신기관명	XXXX용	자격확인요청일	2021.02.15.	
증번호	XXXXXXXXXXXX	사업장관리번호	XXXXXXXXXXXX	
가 입 자 (세대주)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김아빠	XXXXXX-XXXXXX		
자 격 확 인 내 역				
성명	주민등록번호	자격취득일	자격상실일	급여정지사유 및 기간
김아빠	XXXXXX-XXXXXX	XXXX.XX.XX.	XXXX.XX.XX.	
이엄마	XXXXXX-XXXXXX	XXXX.XX.XX.	XXXX.XX.XX.	
김본인	XXXXXX-XXXXXX	XXXX.XX.XX.	XXXX.XX.XX.	
김동생	XXXXXX-XXXXXX	XXXX.XX.XX.	XXXX.XX.XX.	
----	-----	이하여백	-----	-----

- 직장/지역가입자 구분 : **사업장관리번호**가 기재되어 있으면 ‘직장’가입자,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‘지역’가입자
- 부양자 :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상 **가입자(세대주)**
- 피부양자 :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상의 **자격확인내역**에 등재된 가족
 👉 위의 서류상 부양자는 ‘**김아빠**’ / 피부양자는 ‘**이엄마**’, ‘**김본인**’, ‘**김동생**’임.

5. 비대면으로 제출서류 발급하는 법

(※ 온라인 발급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 필요)

Q. 21 ① 「주민등록등본」은 어디서, 어떻게 발급하나요?

○ 온라인 발급

★ 정부24(www.gov.kr) ⇒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 인증서 로그인

⇒ 자주 찾는 서비스 ⇒ 주민등록등본(초본) 클릭 ⇒ 발급

⇒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: [대구광역시 **구](#)(※ 본인이 살고 있는 구로 선택)

⇒ 발급형태를 선택해 주세요. : ● 발급

⇒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세요. : [온라인발급\(본인출력\)](#) ⇒ 민원신청하기

Q. 22 ④ 「주민등록초본」은 어디서, 어떻게 발급하나요?

○ 온라인 발급

★ 정부24(www.gov.kr) ⇒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 인증서 로그인

⇒ 자주 찾는 서비스 ⇒ 주민등록등본(초본) 클릭 ⇒ 발급 ⇒ '주민등록표초본' 선택

⇒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: [대구광역시 **구](#)(※ 본인이 살고 있는 구로 선택)

⇒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. : ● 본인

⇒ 발급형태를 선택해 주세요. : ● 선택발급

⇒ 표시할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. : ☒ 병역사항, ● 입영/전역일자

⇒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세요. : [온라인발급\(본인출력\)](#) ⇒ 민원신청하기

Q. 23 ② [최종학력이 초·중·고등학교일 경우만] 초·중·고등학교 「졸업증명서」는 어디서, 어떻게 발급하나요?

○ 온라인 발급

★ 정부24(www.gov.kr) ⇒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 인증서 로그인

⇒ 검색창에 [졸업증명서](#) 입력 ⇒ 초중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 ⇒ 발급

⇒ 학교명 : [학교검색](#) 클릭 후 학교 선택 ⇒ 수령방법 : 온라인발급(본인출력)

⇒ 민원신청하기

Q.

24

② 대학(교)·대학원 「졸업증명서」 등은 어디서, 어떻게 발급하나요?

○ 온라인 발급 : 재학·졸업한 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증명서류 발급

○ FAX민원 발급(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)

★ 정부24(www.gov.kr) ⇒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 인증서 로그인

⇒ 자주 찾는 서비스 ⇒ 대학 제증명 일괄 신청

⇒ 구분 : 대학(교), 대학원(석사), 대학원(박사) 중 선택

⇒ 대학교(대학원) : 학교검색 클릭 후 학교 선택 ⇒ 전공학과 : 본인 전공 입력

⇒ 증명서 : ● 직접선택 ⇒ 증명서와 발급부수를 선택해 주세요. : 졸업, 졸업예정, 대학교 수료증명, 재학, 휴학, 제적증명서 중 해당서류 체크, 국문 1부 선택

⇒ 수령기관 : 기관검색 클릭 후 '방문 가능한(가까운) 행정복지센터' 입력(예. 범어2동○, 범어동×)

⇒ 민원신청하기 ⇒ (신청 후 3시간 이내) 서류 발급완료 문자 받고

⇒ '(아까 입력한) 행정복지센터' 방문하여 서류수령

A.

* 졸업, 졸업예정, 대학교 수료증명, 재학, 휴학, 제적증명서 중 해당서류?

- 졸업자 : 「졸업증명서」
- 졸업자는 아니나, 졸업예정인 자 : 「졸업예정증명서」
- 졸업자는 아니나, 졸업학점을 수료한 자 : 「수료증명서」
- 재학생이나, 방통대·사이버대 재학 중인 자 : 「재학증명서」
- 졸업자는 아니나, 졸업학년 휴학생 : 「휴학증명서」
(휴학증명서에 졸업학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「성적증명서」 추가 제출)
- 학교를 중도포기한 자 : 「제적증명서」

참고 최종학력 관련, 청년수당 신청자격?

- (원칙) 초·중·고·대학교 졸업자
- (예외인정) 졸업예정자, 졸업학점 수료자, 방통대·사이버대 재학생,
졸업학년 휴학생, 학교 중도포기자(제적·자퇴생)

Q. 25

③, ④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 및 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는 어디서, 어떻게 발급하나요?

A.

○ 온라인 발급

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⇒ 로그인
⇒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 로그인(※ 발급대상자 명의로 로그인 / 예. 아버지 서류 발급 시 아버지 인증서로 로그인) ⇒ 민원여기요 ⇒ 개인민원
⇒ 자격확인서(※자격득실확인서 아님) ⇒ 자격확인서 취득내역 : [가족 전부 체크](#)
⇒ 프린트 발급

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⇒ 로그인
⇒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 로그인(※ 발급대상자 명의로 로그인 / 예. 아버지 서류 발급 시 아버지 인증서로 로그인) ⇒ 민원여기요 ⇒ 개인민원
⇒ 보험료 납부확인서 ⇒ 발급용도 선택 : [납부확인용](#), 국문/영문 선택 : [국문](#),
발행신청년월 : [2022. 1. ~ 2022. 12.](#), 세부 보험 : [건강·장기요양보험료](#)
⇒ 조회 ⇒ 출력

○ FAX 발급 : 온라인 발급이 어려울 경우

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에 '발급대상자 본인이 직접' 전화(예. 아버지 서류를 떼야 할 경우, 아버지가 전화해야 함) ⇒ 발급 요청 ⇒ 팩스 수신

Q. 26

㉮ 「가족관계증명서(상세)」는 어디서, 어떻게 발급하나요?

A.

○ 온라인 발급

★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<http://efamily.scourt.go.kr>) ⇒ 가족관계증명서
⇒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. ☒ ⇒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추가정보확인 입력
⇒ 조회 ⇒ 공동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⇒ 1. 발급 대상자 : ☒ 본인
⇒ 2. 증명서 종류 : ☒ 가족관계증명서
⇒ 3. 일반증명서, 상세증명서, 특정증명서 : ☒ 상세증명서
⇒ 4. 주민등록번호(뒷부분 6자리) 공개 여부 : ☒ 전부 비공개
⇒ 5. 수령방법 : ☒ 직접 인쇄
⇒ 6. 신청사유 : ☒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⇒ 신청하기

6. 선정대상자 발표 및 의무사항 등

Q. 27 선정결과를 어디서 확인하나요?

★ 확인 방법 :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(youthdream.daegu.go.kr/support/main)
⇒ 마이페이지 ⇒ 신청내역 조회에서 상태 확인

A.

구분		마이페이지 상태
심사중		‘신청완료’ 또는 ‘1차승인’
심사완료	선정자	‘자격조건심사승인’
	미선정자	‘자격조건심사탈락’ 또는 ‘신청반려’

Q. 28 프로그램 수료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- 온라인 수당신청(청년실태 설문조사, 활동계획서 작성 포함)
↓ (마이페이지-신청내역 조회에서 ‘수당지급신청’ 또는 ‘수당지급완료’ 상태 확인)
-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
★ 발급 방법 : 대구 지역 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(본인 신분증 지참, 대리발급 불가)
⇒ 대구시 ‘청년응원카드’ 발급 신청(고용노동부 ‘취업지원카드’를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)

〈 하나체크카드 “청년응원카드” (블루, 핑크 2가지 유형) 〉

A.



※ 카드발급·사용 문의 : 하나카드 고객센터(1800-1111)

7. 지원금 사용

Q. 29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?

○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(청년응원카드) 포인트로 지급되며, 현금이 아니므로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에서 포인트 확인 불가

A.

※ 지원금 지급여부 및 포인트 한도액 확인 방법

- ① 문자메시지(포인트 지급·사용 시 하나카드사에서 문자 발송)
- ② 하나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(로그인 ⇒ 혜택 ⇒ 정부지원 사업 ⇒ 대구형 청년수당 조회)
- ③ 하나카드 고객센터 전화(1800-1111)

Q. 30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?

A.

○ 특급호텔, 유흥주점, 면세점, 총포류 구입, 귀금속, 도박(카지노, 복권방), 안마시술소, 상품권 구입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은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온·오프라인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

※ 자세한 사항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(youthdream.daegu.go.kr/support/main)
⇒ 커뮤니티 ⇒ FAQ(자주하는 질문) ⇒ **청년응원카드 가맹점 업종 제한 안내** 참고

Q. 31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?

A.

○ 지원금은 4개월 내 사용하여야 하며, 미사용 포인트는 회수 예정

8. 지원금 사용 후 의무사항

Q. ³²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. 해야 할 일이 있나요?

A.

○ 결과보고서 작성 및 만족도 설문 참여

★ 참여 방법 :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(youthdream.daegu.go.kr/support/main)

⇒ 마이페이지 ⇒ 결과보고서(만족도설문)

※ 만족도 조사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사사업[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(진로탐색지원형), 청년희망적금 등] 참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Q. ³³ 결과보고서(만족도 설문 포함)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?

A.

○ 지원금 전액 사용 후 10일 이내

★ 가구원 수 및 소득판단 예시

<미혼인 경우>

Q. 01 주민등록등본에도 건강보험증에도 함께 등재된 가족이 없는 경우,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A.

- 가구원 수 : 1명(청년 본인)
-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(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) : 본인
- 소득기준(건강보험료) : 1인가구 기준 금액(직장가입자 102,842원 /지역가입자 77,067원) 이하
-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: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본인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, 본인이 부양자일 경우 본인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와 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

Q. 02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과 따로 등재되어 있으나,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건강보험에 할아버지·할머니·어머니·형·본인이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A.

- 가구원 수 : 3명(본인, 아버지, 어머니)
 - ☞ 조부모는 포함하지 않음, 형제자매는 등본 상 함께 등재된 경우만 포함
-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(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) : 본인, 아버지, 어머니
- 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 : 3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금액(223,722원) 이하
-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: 아버지 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, 본인과 어머니의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
 - ☞ 추가서류 : 본인 「가족관계증명서(상세)」
(부모와 등본은 따로 등재되어 있으면서, 건강보험증에는 함께 등재된 경우)

Q.

03

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과 따로 등재되어 있으나,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인 언니의 건강보험에 어머니·본인이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A.

○ 가구원 수 : 2명(본인, 어머니)

☞ 형제자매는 등본 상 함께 등재된 경우만 포함

○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(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) : 본인, 어머니

○ 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 : 2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금액(171,393원) 이하

☞ 본인과 어머니가 피부양자이므로 건강보험료 “0원” ⇒ 신청가능

○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: 본인과 어머니의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

☞ 추가서류 : 본인 「가족관계증명서(상세)」

(부모와 등본은 따로 등재되어 있으면서, 건강보험증에는 함께 등재된 경우)

Q.

04

주민등록등본 상 아버지·동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, 아버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,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A.

○ 가구원 수 : 3명(본인, 아버지, 동생)

○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(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) : 본인, 아버지

☞ 형제자매는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음

○ 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 : 3인가구 지역가입자 기준금액(242,987원) 이하

○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: 아버지 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,

본인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

Q.

05

주민등록등본 상 아버지·어머니·본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, 아버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,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A.

○ 가구원 수 : 3명(본인, 아버지, 어머니)

○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(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) : 본인, 아버지, 어머니

○ 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 : 3인가구 혼합(직장+지역) 기준금액(227,649원) 이하

○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: 아버지와 어머니의 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,

본인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

<기혼인 경우>

Q. 06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·자녀 1명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A.

- 가구원 수 : 3명(본인, 배우자, 자녀)
-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(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) : 본인, 배우자
- 소득기준(건강보험료) : 3인가구 기준 금액(직장가입자 223,722원 /지역가입자 242,987원/혼합 227,649원) 이하
-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: 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자가 피부양자일 경우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, 부양자일 경우 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

Q. 07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·자녀(1명)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A.

- 가구원 수 : 3명(본인, 배우자, 자녀)
 - ☞ 배우자와 자녀는 등본 상 따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포함
-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(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) : 본인, 배우자
- 소득기준(건강보험료) : 3인가구 기준 금액(직장가입자 223,722원 /지역가입자 242,987원/혼합 227,649원) 이하
-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: 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자가 피부양자일 경우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, 부양자일 경우 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
 - ☞ 추가서류 : 본인 「가족관계증명서(상세)」
(배우자 또는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)

Q. 08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주민등록등본 상 어머니·본인·동생·자녀 1명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A.

- 가구원 수 : 3명(본인, 동생, 자녀)
 - ☞ 기혼자의 경우 부모는 포함하지 않음
-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가족(건강보험 서류 제출대상) : 본인
- 소득기준(건강보험료) : 3인가구 기준 금액(직장가입자 223,722원 /지역가입자 242,987원/혼합 227,649원) 이하
-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: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본인 「건강보험 자격확인서」, 본인이 부양자일 경우 본인 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」
 - ☞ 추가서류 : 본인 「가족관계증명서(상세)」 (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)